

# 「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」

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### 2. 제안이유

- 「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」의 서비스사업에 대한 내용과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관련 산업 투자유치를 활성화
- 기업부설연구소 및 소속 인력의 관내 이전에 대한 혜택과 지원으로 기업의 지역 정착 도모, 연구시설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성장 촉진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연구인력 및 서비스사업에 관한 정의 신설(안 제2조)
- 나. 기업부설연구소 신증설, 임차 및 이전에 대한 지원(안 제23조, 제24조)
- 다. 연구소를 관내 이전, 신설 또는 증설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(안 제25조)
- 라. 관내 이전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인력에 대한 혜택(안 제27조)
- 마. 관내 신설 등의 기업부설연구소 및 소속 인력 처우개선(안 제28조)
- 바.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38조)
- 사. 용어, 띄어쓰기 및 인용사항 정비(안 제2조~제4조, 제6조, 제9조, 제11조~제13조, 제15조, 제21조, 제25조의2~제26조의2, 제29조~제31조, 제35조)

## 4. 참고사항

### ○ 관계법령

- 「산업발전법 시행령」 제3조
- 「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」 제2조

## 5. 검토의견

### ○ 본 조례안은

- 지식서비스산업과 기업부설연구소 및 인력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 유치를 활성화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,

### ○ 검토 결과,

- 본 개정안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신·증설 및 이전에 대한 지원 근거(안 제23조 ~ 제25조)를 마련하고, 해당 연구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및 혜택(안 제27조 ~ 제28조)을 규정함으로써 우수 연구인프라 구축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.
- 안 제38조에서는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,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.
- 다만, 연구소와 연구인력 우대 시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바, 안 제27조에 명시된 연구인력 지원 혜택의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때, 객관적인 지원 기준과 범위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-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인 만큼, 신설되는 지원 제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